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나308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나3083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12257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9. 23.

판결선고 2022. 10. 28.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12257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15,870,19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870,1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피보전채권인 C에 대한 구상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지현, 판사 오덕식, 판사 한정훈

별지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강릉시 G 답 1729㎡ 중,

C 지분 1729분의 1067.84 끝.

